

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77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6. 7. 8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의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조례상 기존 건강가정지원사업 중심의 센터 운영체계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포함한 가족센터 체계로 전환하고, 이에 따른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및 센터 명칭 변경 (안 제2조)

- (현행)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
- (개정) 김포시 가족센터

나. 센터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정비 등 (안 제3조 및 제5조)

- (현행) 건강가정지원사업 중심의 내용
- (개정)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련 사항 추가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나. 관계법령·현행 자치법규 : 붙임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6. 5. 21. ~ 6. 10.(20일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부서협의결과

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
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가) 중앙부처 :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

나) 경 기 도 : 가족정책과

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”를 “김포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본문 중 “건강가정지원센터”를 “가족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건강가정지원센터”를 “가족센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1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
2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
3.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제1항 중 “센터장, 가족상담팀, 가족교육팀,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”을 “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정에 따라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2항 및 제3항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

제9조제1항 후단 중 “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”를 “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5항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가족문화과
입 안 자	담당관·과장·소장 직위·성명	가족문화과장 이 회 숙
	팀장 직위·성명	가족지원팀장 황 수 정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 성 진(☎560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</u>	<u>김포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설치 및 명칭) ① 김포시 <u>건강가정지원센터</u>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② 센터의 명칭은 “김포시 <u>건강가정지원센터</u> ”로 한다.	제2조(설치 및 명칭) ① ----- <u>가족센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<u>가족센터</u> ”----- -----.
제3조(기능)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기능) ① ----- -----.

1.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·상담

2.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

3.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

4.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

5.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

6. 그 밖에 김포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

② (생략)

제5조(조직) ① 센터는 센터장, 가족상담팀, 가족교육팀,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

② 직영 운영 시 센터장은 건강가정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가족문화과장이 겸직한다.

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, 「건강가정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제9조(운영)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.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

1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

2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

3.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조직) ① -----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-----
--.

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정에 따라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2항 및 제3항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

제9조(운영) ① -----
--.

필요한 경우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5항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건강가정기본법

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9. 15.>

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(이하 “건강가정사”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
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 <개정 2018. 1. 16., 2025. 10. 1.>

1.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2.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·가정학·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

④ 센터의 조직·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·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3. 24.,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25. 10. 1.>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5. 19.>

[제목개정 2025. 4. 22.]

제35조의2(가족센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5. 4. 22.]

[중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<2025. 4. 22.>

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

제4조의2(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)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가족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(이하 “다문화가족 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·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해당 가족센터의 조직·인사·복무·보수·회계·물품·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5. 9. 30.][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<2025. 9. 30.>]

다문화가족지원법

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0. 5. 19.>

1.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
2.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
3.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
4.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5.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
6.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·번역 지원사업
7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
8.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·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3. 2.>

⑦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, 위탁·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 10. 1.>

[전문개정 2012. 2. 1.]

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7.7.26>

제2조(설치 및 명칭) <조제목 개정 2017.7.26>

①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개정 2017.7.26>

② 센터의 명칭은 “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”로 한다.<개정 2017.7.26>

제3조(기능)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7.7.26>

1.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·상담
2.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
3.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
4.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
5.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
6. 그 밖에 김포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

② 제1항의 기능 중 김포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제4조(시설)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·상담실·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조직) ① 센터는 센터장, 가족상담팀, 가족교육팀,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(개정 2008.7.29, 2017.7.26)

② 직영 운영 시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가족문화과장이 겸직한다.(개정 2008.7.29, 2012.2.1, 2024.3.27.)

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, 「건강가정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.<개정 2017.7.26>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에

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7.7.26.,2020.9.29.>

제7조(자원봉사자)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,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
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강사)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제8조제3항에서 이동 2017.7.26>

제9조(운영)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.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17.7.26>

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<개정 2017.7.26>

제10조(주민참여)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도감독)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한 경우 시장은 센터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<개정 2017.7.26>

제12조(센터의 지원) 시장은 센터 설치·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 등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